

##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

\*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신청인	제작자명	법인(사업자)등록번호			
	대표자명	생년월일			
	전화번호				
	주소(또는 사업장소재지)				
제작자 등록번호	자기인증 능력	[ ] 확보 [ ] 미확보			
제작자 구분	구분 1	[ ] 자동차 제작자	[ ] 이륜 자동차 제작자		
	구분 2	[ ] 국내 제작·조립자	[ ] 수입자		
등록목적	[ ] 판매목적	[ ] 자가사용			
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구분	[ ] 완성자동차	[ ] 미완성자동차			
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류 및 규모 (※미완성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정하는 차종)	종류	규모			
	[ ] 승용	[ ] 경형	[ ] 소형	[ ] 중형	[ ] 대형
	[ ] 승합	[ ] 경형	[ ] 소형	[ ] 중형	[ ] 대형
	[ ] 화물	[ ] 경형	[ ] 소형	[ ] 중형	[ ] 대형
	[ ] 특수	[ ] 경형	[ ] 소형	[ ] 중형	[ ] 대형
[ ] 이륜	[ ] 경형	[ ] 소형	[ ] 중형	[ ] 대형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(제2항)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수리하고 제작자등록번호를 배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

### 유의사항

- 자기인증능력 미확보 제작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